



[2019. 5. 2.] [7113 , 2019. 5. 2.,]
(

)02 - 2133 - 2353

6 (가) (" ")

1 . ,
.

9 3 가 4
, 가 . , 1 가
15 .

1. 4

가 ,

가 가 .

2.

3.

4.

5.

6. 14 4

7.

8.

9.

15 () 「 」 8

.
11 2

가

, , . .
가 .

1.

2. 가

3.

4.

5.

23 () .

1.

2.

1

1

2

23 2() .

23 2

1. 7 1

2.

3.

4. 가 가

5. 가

[2017.3.23.]

< 7113 ,2019. 5. 2.>

1 ()

2 () 7 1 12 2019 12

31 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시 5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거리·올림픽로·동로·남계로·회계로·동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이화여대길·대흥로·구 용산선철도·양화로·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도림로·선유로·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강남·서초지역 : 반포대로·올림픽대로·본당수서로·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로·석촌호수로·삼학사로·잠실로·올림픽로·송파대로·신천로·오금로·올림픽로·위례성대로·백재교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원호지역 : 올림픽로·상암로·양재대로·동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7) 청량리지역 : 계기로·전농로·서촌시립대로·천호대로·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8)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승정로·동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9) 미아지역 : 도봉로·오현로·오래산로·정릉로·삼양로·순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10) 북동지역 : 북동동로·북동서로·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제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존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존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분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정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는 주차주권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정경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묘별 세부기준에 의한 동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